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희대학교

【붙임】

성과급 기여율 임의부여 및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p>BK21 플러스 사업단 성과급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4】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르면 성과급은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BK21 플러스 사업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성과급은 반드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산출된 기여율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기여율 계산 방법은 상세하게 정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경희대학교 A는 2017. 2. 21. 같은 대학 다른 사업단과 달리 자체 운영규정에 성과급 평가는 'BK사업 성립에 대한 공헌', 'BK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행정적 공헌',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참여교수의 공헌' 3개 영역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여율 계산방법은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단장이 소속 연구원 4명에게 기여율을 임의로 부여하여 2016년 성과급 11,900천원을 나눠 지급하는 등 【붙임】 “성과급 기여율 임의부여 및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나노·마이크로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변환 효율 향상 사업단은 같은 대학 다른 사업단과 달리 자체 운영규정에 성과급 평가는 'BK사업 성립에 대한 공헌', 'BK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행정적 공헌',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참여교수의 공헌' 3개 영역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여율 계산방법은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단장이 소속 연구원 4명에게 기여율을 임의로 부여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성과급 합계 39,954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 통보 - 자체 「BK21 플러스 사업운영 규정」에 성과급 기여율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건명	대상	기여율	지급일	지급액
2016년 성과급 지급	-	24.7	'17.2.21	2,950
	-	24.7	'17.2.21	2,950
	-	25.2	'17.2.21	3,000
	-	25.2	'17.2.21	3,000
소계	4명			11,900
2017년 성과급 지급	-	25.8	'18.2.13	2,280
	-	25.8	'18.2.13	2,280
	-	23.8	'18.2.13	2,114
	-	24.6	'18.2.13	2,180
소계	4명			8,854
2018년 성과급 지급	-	25	'19.1.14	4,800
	-	25	'19.1.14	4,800
	-	25	'19.1.14	4,800
	-	25	'19.1.14	4,800
소계	4명			19,200
합계	12명			39,954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경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p>물품구매 부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특성화사업 관리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5조, 제35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동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경희대학교 구매규정」 제6조에 따르면 부서 자체구매 시에는 가격조사, 업체 선정 및 발주, 검수, 대금지급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대학 특성화사업 운영 매뉴얼(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학교 B는 수도권 대학특성화사업(사업명 : C)을 수행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아니한 'D'를 제작한 사실이 있으며, · 특히, E는 위 인쇄물 제작 시 내부품의 및 가격조사도 없이 회계연도가 임박한 2017. 2. 24. ○○에 인쇄를 의뢰하였으며, 또한, 위 인쇄물이 2017. 3 월초에 납품되었는데도 2017. 2. 23. 납품되고 당일 F에게 'D' 34부를 배부한 것처럼 분출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인쇄물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위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문책 1명) ○ 경고(1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로부터 2017. 2. 27.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위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G팀에 위 인쇄물 제작비용 8,977,14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당일 전액 지급되게 한 사실이 있음.</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원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	<p>교재개발비 초과 지급 등</p> <p>○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관리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33조에 따르면 대학의 사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교재개발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2016 원광대학교 프라임사업 행정가이드」에 따르면 교재개발비는 교과목이나 교재개발에 따른 경비로 교재(책자)의 경우 최대 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단에 제출된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저작권 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저작권법」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교재개발비 초과 지급에 관한 사항】 — ①</p> <p>- 원광대학교 H은 2017. 2. 23. 'Y' 한글 교재를 공동 제작한 J 등 4명에게 프라임사업 가이드에서 정한 한도액 5,000천원보다 1,000천원 많은 합계 6,000천원을 교재 개발비로 지급하는 등 【붙임1】 “교재개발비 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2월 위 J 등 교재개발에 공동 참여한 교수 8명에게 프라임사업 가이드에서 정한 한도액보다 합계 2,000천원(1인당 250천원)을 초과하여 교재 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개발비 지원 교재 개인 출판에 관한 사항】 — ②</p>	<p>< ① 관련 ></p> <p>○ 주의(2명)</p> <p>○ 시정(회수)</p> <p>- 초과 지급된 교재 개발비 합계 2,000천원을 J 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② 관련 ></p> <p>○ 주의(1명)</p> <p>○ 통보</p> <p>- 학교 승인없이 임의 출판된 2건의 자사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저작권 확보(출판권 설정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 원광대학교 K은 2018. 11. 16. 프라임사업비로 공동개발한 교재 'L'을 M 등 9명과 공저자로 출판하는 등 【붙임2】 “개발비 지원 교재 개인 출판 현황”과 같이 2018. 11.부터 2018. 12.까지 위 K은 프라임사업비로 공동개발한 교재 2권을 학교 허락 없이 위 M 등 15명과 공저자로 출판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교재개발비 초과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교과목명 (개발교재명)	형태	지원일자	기준금액 (1과목당)	지원금액 (초과금액)	수령인			
						학과명	직급	성명	비고
1	I	한글 교재	2017-02-23	5,000	1,500	-	-	J	책임교수
					1,500	-	-	-	
					1,500	-	-	-	
					1,500	-	-	-	
	소계			5,000	6,000 (1,000 초과)				
2	-	한글 교재	2017-02-23	5,000	1,500	-	-	-	
					1,500	-	-	-	
					1,500	-	-	-	
					1,500	-	-	-	책임교수
	소계			5,000	6,000 (1,000 초과)				
합계					2,000 초과				

【붙임2】

개발비 지원 교재 개인 출판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교재개발비 신청·수령 현황				저서(책자) 출판									
				교과목명 (개발교재명)	교재형태	지원금액 (천원)	지원일자	책 제목	출판일	저자명	학교허락 여부						
1	-	-	-	L	한글교재	500	2018-12-31 (신청일자: '18.11.21.) (대표신청자: K)	-	2018-11-16	-	×						
	-	-	-			500											
	-	-	-			500											
	-	-	-			500											
	-	-	-			500											
	-	-	-			500											
	-	-	-			500											
	-	-	-			500											
	소계					4,000											
	2	-	-			-						-	한글교재	300	2019-01-30 (신청일자: '18.12.10) (대표신청자: K)	-	2018-12-24
-		-	-	1,000													
-		-	-	500													
-		-	-	800													
-		-	-	1,000													
소계				3,6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원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p>PRIME사업단 운영경비 집행 부당 등</p> <p>○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관리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31조 및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비 집행기준(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 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회의비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원광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교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객관적 증빙없는 프라임사업 기타사업운영경비 집행】 ①</p> <p>- 원광대학교 N은 2016. 9. 6. 내부품의서 등 집행계획 없이 전북 익산 소재 □□에서 301,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프라임사업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지출하여줄 것을 대학 본부에 의뢰하는 등 【붙임1】 “객관적 증빙없는 프라임사업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9.부터 2019. 2.까지 위 N 등 교직원 21명은 내부품의 등 집행계획 없이 위 음식점 등에서 총 167회에 걸쳐 함께 12,313,7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p>	<p>< ①,② 관련 ></p> <p>○ 통보(문책, 2명)</p> <p>< ① 관련 ></p> <p>○ 경고(10명)</p> <p>○ 주의(9명)</p> <p>○ 통보</p> <p>- 내부품의 및 회의록 등을 구비하지 않고 법인카드 영수증만으로 집행한 사업비 운영경비 함께 12,313,700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여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N 등 관련 자들로부터 회수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반납하기 바람</p> <p>< ② 관련 ></p> <p>○ 경징계(1명)</p> <p>○ 경고(4명)</p> <p><별도조치></p> <p>○ 수사의뢰</p> <p>○ 고발</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회의여부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카드영수증만 첨부하여 대학본부에 지출을 의뢰하여 프라임사업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전액 집행되게 한 사실이 있음</p> <p>【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후(허위) 작성】 ②</p> <p>- 원광대학교 O와 P은 내부품의 및 회의록 등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프라임사업 기타사업운영경비를 집행한 것이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감사 기간('19.5.13.~5.17.) 중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가 갖추어진 것처럼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련 회계서류에 첨부하기로 협의한 다음 Q에게 이를 지시하고, Q 및 Q으로부터 재차 지시를 받은 직원 4명*은 2019. 5. 20.부터 5. 23.까지 기간 중 미상일에 위 N이 2016. 10. 18. △△(익산 소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110,000원)한 건에 대해 해당 일에 학생회 주요임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붙임2】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후(허위) 작성·제출 현황”과 같이 2019. 5. 20.부터 5. 23.까지 기간 중 위 Q 등 대학혁신사업단 직원 5명은 프라임사업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집행한 법인카드 결제('16.9.~'19.2.) 금액(지출건수 141건, 함께 9,196,300원)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어 집행된 것처럼 회의록 63매, 초과근무확인서 21매(78건)를 허위 작성하여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p> <p>* R, S, T, U</p> <p>· 특히, 위 Q은 V(계약기간 '---~'---)의 동의없이 V이 초과근무(근무일시: '16.11.10. 17:30~21:00, 근무내용: 장학금자료 준비) 하였다는 내용의 V 명의 초과근무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붙임3】 “퇴직자 초과근무확인서 허위작성 현황”과 같이 위 V 등 퇴직자 12명이 2016. 11.부터 2018. 8.까지 모두 97회 초과근무 하였다는 내용의</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월별 '프라임사업단 초과근무확인서' 14매를 허위작성한 사실이 있음	

【붙임1】

객관적 증빙없는 프라임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용자		사용일	시간	금액	상호	소재지	사용대금 집행일	증빙자료			비고 (유일)
	직위	성명							내부품의	회의록	카영증	
1			2016-09-06	203712	301,000	□□	전북 익산	2016-10-26	×	×	○	
2			2016-09-07	191927	222,500	-	전북 익산	2016-10-26	×	×	○	
3			2016-09-07	205118	216,000	-	전북 익산	2016-10-26	×	×	○	
4			2016-09-08	123027	432,000	-	전북 익산	2016-10-25	×	×	○	
5			2016-09-08	185944	260,000	-	전북 익산	2016-10-26	×	×	○	
6			2016-09-28	125936	45,000	-	전북 익산	2016-10-26	×	×	○	
7			2016-10-11	202712	97,000	-	전북 익산	2016-11-24	×	×	○	
8			2016-10-18	124834	110,000	-	전북 익산	2016-11-25	×	×	○	
9			2016-10-18	193127	115,000	-	전북 익산	2016-11-25	×	×	○	
10			2016-11-04	123422	16000	-	전북 익산	2016-11-25	×	×	○	
11			2016-11-04	195926	140000	-	전북 익산	2016-11-25	×	×	○	
12			2017-01-02	191348	42,000	-	전북 익산	2017-01-20	×	×	○	
13			2017-01-10	124009	156,000	-	전북 익산	2017-02-09	×	×	○	
14	-	N	2017-02-21	125307	63,000	-	전북 익산	2017-02-27	×	×	○	
15			2017-07-19	120102	70,000	-	전북 익산	2017-08-24	×	×	○	
16			2017-07-20	175903	67,000	-	전북 익산	2017-08-24	×	×	○	
17			2017-11-29	92225	15,000	-	전북 익산	2017-12-21	×	×	○	
18			2017-11-30	94032	35,000	-	전북 익산	2017-12-21	×	×	○	
19			2017-12-15	191112	338,000	-	전북 익산	2018-01-25	×	×	○	
20			2018-04-04	174204	191,000	-	전북 익산	2018-04-19	×	×	○	
21			2018-04-07	123320	68,000	-	전북 익산	2018-05-10	×	×	○	
22			2018-04-09	115227	49,000	-	전북 익산	2018-05-10	×	×	○	
23			2018-04-10	124850	173,000	-	전북 익산	2018-05-10	×	×	○	
24			2018-04-10	145059	67,500	-	전북 익산	2018-05-10	×	×	○	
25			2018-06-05	121408	35,000	-	전북 익산	2018-07-13	×	×	○	
26			2018-09-20	124458	392,000	-	전북 익산	2018-10-18	×	×	○	
27			2018-12-19	201542	270,000	-	전북 익산	2019-01-21	×	×	○	
28			2019-02-18	125217	280,000	-	전북 익산	2019-02-21	×	×	○	
			소계		4,266,000	-						
29			2016-11-30	154839	8,800	-	전북 익산	2016-12-22	×	×	○	
30			2016-12-07	125405	65,000	-	전북 익산	2017-01-20	×	×	○	
31			2017-01-19	183147	107,600	-	전북 익산	2017-02-09	×	×	○	
32			2017-02-15	125538	37,000	-	전북 익산	2017-02-23	×	×	○	
33			2017-06-29	184014	84,600	-	전북 익산	2017-07-19	×	×	○	
34			2017-06-30	120317	79,500	-	전북 익산	2017-07-19	×	×	○	
35	-	-	2017-09-25	123458	23,000	-	전북 익산	2017-10-20	×	×	○	
36			2017-11-30	121051	220,000	-	전북 익산	2017-12-19	×	×	○	
37			2017-12-13	123627	21,000	-	전북 익산	2018-01-22	×	×	○	
38			2018-07-09	185700	133,000	-	전북 익산	2018-08-10	×	×	○	
39			2018-07-11	123855	51,000	-	전북 익산	2018-08-10	×	×	○	
40			2019-01-28	182612	123,000	-	전북 익산	2019-02-12	×	×	○	
			소계		953,500	-						
												(중략)
166	-	-	2018-07-27	124642	96,000	-	전북 익산	2018-08-10	×	×	○	
167			2019-01-16	132704	135,000	-	전북 익산	2019-02-12	×	×	○	
			소계		231,000	-						
			합계		12,313,700	-						

【붙임2】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후(허위) 작성·제출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용자		사용일	시간	금액	상호	허위 증빙서류 제출현황		
	직위	성명					작성일시	제출서류	비고(퇴직자 서명)
1	-	N	2016-10-18	124834	110,000	△△	2019-05-20~ 05-23	회의록	
2			2016-11-04	123422	16000	-		회의록	
3			2017-01-10	124009	156,000	-		회의록	
4			2017-02-21	125307	63,000	-		회의록	
5			2017-07-20	175903	67,000	-		초과근무확인서	
6			2017-12-15	191112	338,000	-		초과근무확인서	
7			2018-04-04	174204	191,000	-		초과근무확인서	
8			2018-06-05	121408	35,000	-		회의록	
9			2018-12-19	201542	270,000	-		초과근무확인서	
10			2019-02-18	125217	280,000	-		회의록	
소계					1,526,000				
11	-	-	2016-11-30	154839	8,800	-	2019-05-20~ 05-23	회의록	
12			2016-12-07	125405	65,000	-		회의록	
13			2017-01-19	183147	107,600	-		초과근무확인서	
14			2017-02-15	125538	37,000	-		회의록	
15			2017-06-29	184014	84,600	-		초과근무확인서	
16			2017-06-30	120317	79,500	-		회의록	
17			2017-09-25	123458	23,000	-		회의록	
18			2017-11-30	121051	220,000	-		회의록	
19			2017-12-13	123627	21,000	-		회의록	
20			2018-07-09	185700	133,000	-		초과근무확인서	
21			2018-07-11	123855	51,000	-		회의록	
22			2019-01-28	182612	123,000	-		회의록	
소계					953,500				
(중략)									
140	-	-	2018-07-27	124642	96,000	-	2019-05-20~ 05-23	회의록	
141	-	-	2019-01-16	132704	135,000	-		회의록	
소계					231,000				
합계					9,196,300			회의록 63건, 초과근무확인서 78건	

※ 사후 작성한 초과근무확인서에 현재 재직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고, 퇴직자는 현재 재직자 등이 서명

【붙임3】

퇴직자 초과근무확인서 허위작성 현황

연번	근무월	일자	근무시간		근무자 성명	근무내용	비고
			시작	종료			
1	2016.11.	2016-11-10	17:30	21:00	V	장학금자료준비	
		2016-11-15	17:30	21:00	-	환경개선예산배정	
		2016-11-21	17:30	22:00	-	연구재단보고자료준비	
2	2017.01.	2017-01-03	17:30	20:00	-	사업추진위원회준비	
			17:30	20:00	-	사업추진위원회준비	
		2017-01-11	17:30	21:00	-	사업추진위원회준비	
			17:30	21:00	-	사업추진위원회준비	
			17:30	21:00	-	사업추진위원회준비	
		2017-01-13	17:30	20:30	-	사업추진위원회준비	
			2017-01-19	17:30	21:00	-	예산집행현황과약
17:30	21:00			-	예산집행현황과약		
2017-01-25	17:30		20:30	-	진료컨설팅준비		
(중략)							
13	2018.08.	2018-08-14	17:30	23:10	-	프라이م 홍보관 디자인 작성 및 영상제작	
		2018-08-16	17:30	21:50	-	프라이미관 개관식 준비	
		2018-08-20	17:30	22:15	-	프라이미관 개관식 준비	
		2018-08-21	17:30	20:35	-	프라이미관 개관식 준비	
		2018-08-22	17:30	22:00	-	프라이미관 개관식 준비	
		2018-08-23	17:30	22:20	-	프라이미관 개관식 준비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원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5	<p>학습동아리 구입도서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물품 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대학 특성화 사업 운영 매뉴얼(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원광대학교 W은 2016년도에 대학특성화사업 일환으로 학습동아리인 'X'를 운영('16.9.26.~12.2)하면서 위 동아리에서 구입한 도서 8권을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통해 중앙 관리하지 않고 동아리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대학에 반납 하지 않고 분실하는 등 【붙임】 “학습동아리 구입도서 관리 소홀 현황”과 같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학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운영한 'X' 등 8개 학습동아리가 구입한 도서 총 95권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중앙 관리하지 않고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반납 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등 도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특성화사업 일환으로 구입한 도서 95권을 모두 대학에 귀속하기 바람

【붙임】

학습동아리 구입도서 관리 소홀 현황

연번	동아리명	활동기간	도서명	출판사	구입일	구입권수	보관현황
1	X	'16.9.26~12.2	-	-	2016.10.07	3	분실
			-	-	2016.10.07	2	분실
			-	-	2016.10.07	3	분실
2	-	'16.9.26~12.2	-	-	2016.10.07	13	학생보관
3	-	'17.4.27~12.1	-	-	2017.10.27	13	분실
4	-	'17.4.27~12.1	-	-	2017.11.29	10	분실
5	-	'18.4.23~12.3	-	-	2018.05.04	10	학생보관
			-	-	2018.11.09	1	동아리실
			-	-	2018.11.09	1	동아리실
			-	-	2018.11.09	2	동아리실
			-	-	2018.11.09	2	동아리실
			-	-	2018.11.09	2	동아리실
			-	-	2018.11.09	1	동아리실
			-	-	2018.11.09	1	동아리실
6	-	'18.4.23~12.3	-	-	2018.05.11	15	학생보관
7	-	'18.4.23~12.3	-	-	2018.05.25	1	동아리실
			-	-	2018.05.25	1	동아리실
			-	-	2018.05.25	1	동아리실
			-	-	2018.05.25	1	동아리실
			-	-	2018.05.25	1	동아리실
			-	-	2018.05.25	1	동아리실
			-	-	2018.05.25	1	동아리실
			-	-	2018.05.25	1	동아리실
8	-	'18.4.23~12.3	-	-	2018.10.10	8	학생보관
계						9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원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6	<p>대학귀속 교재(사업 산출물) 개인출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특성화사업 운영 매뉴얼(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성화 사업 교재개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교재개발 성과로 발생한 저작권은 교재개발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대학이 소유하며, 「저작권법」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원광대학교 Y는 2018. 1. 31. 대학특성화사업비로 개발한 'Z' 교재개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 12. 28. 위 교재를 AA 등과 공저자로 제목만 바꿔 개인출판(도서명: Z, 저자: Y, AA, AB, AC, 출판사: AD)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1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승인없이 임의 출판된 저서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저작권확보(출판권리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광주보건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7	<p>NCS 교육여건개선 사업비 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 운영 지침(한국연구재단)」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은 목적외 사용이고, 「2016~2018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사업비는 특성화 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광주보건대학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016~2018년 수정수행사업계획서」에 따르면 NCS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보유기자재 유지보수비'는 강의실과 실습실의 기자재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 광주보건대학교는 2016. 6. 10. AE 연구실의 프린터 수리 비용 51,000원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NCS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보유기자재 유지보수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NCS 교육여건개선 사업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6.부터 2019. 2.까지 위 AE 연구실 등 교내 31개 사무실에 보관된 비품(컴퓨터 등 14종) 수리비용 합계 23,006,300원을 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보유기자재 유지보수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한 합계 23,006,300원을 한국연구재단에 반납하기 바람

【붙임】

NCS 교육여건개선 사업비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집행일	사업비명	수리물품 보관장소	수리 물품명	수리 내역	수리 비용
1	2016	2016.6.10.	NCS 교육여건개선	AE 연구실	프린터	급지롤러 교체수리	51,000
				-	냉난방기	리모컨교체	26,000
				-	냉난방기	팬세척	35,000
				-	냉난방기	냉매보충	64,000
2	2016.9.6.	NCS 교육여건개선	-	복사기	급지롤러 교체	120,000	
			-	냉난방기	압력점검 수리	15,000	
			-	냉난방기	실외기 점검	15,000	
			-	냉난방기	압력점검 수리	15,000	
			-	노트북	액정교체	242,000	
-	노트북	액정교체	253,000				
(중략)							
2016회계연도 소계							7,758,500
6	2017	2017.4.17.	NCS 교육여건개선	-	복사기	브레이드 및 PCR롤러 교체	170,000
				-	복사기	급지롤러 교체	150,000
				-	복사기	드럼및부속 교체수리	380,000
				-	복사기	드럼및부속 교체수리	330,000
				-	문서제단기	구동부기어	132,000
				-	코팅기	모터트렌스	220,000
-	코팅기	메인pcb	198,000				
7	2017	2017.7.19.	NCS 교육여건개선	-	복사기	정작기 필름 및 프린트roller 교체	310,000
				-	복사기	복사기 전원 재설정	80,000
				-	복사기	전사벨트 수리	220,000
				-	냉난방기	컴프기동 불량	285,400
				-	카메라	tape, cable sit display교환	28,100
				-	카메라	gear 4/gear 5 교환	28,400
(중략)							
2017회계연도 소계							7,081,900
(중략)							
17	2018	2019.2.20.	NCS 교육여건개선	-	넷하드	메인보드 수리	638,000
				-	넷하드	하드디스크 교체	242,000
				-	복합기	정작기 교체	1,307,900
2018회계연도 소계							8,165,900
합계							23,006,3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광주보건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p>사업계획서 未반영 사업비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 운영 지침(한국연구재단)」 제38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은 목적외 사용이고, 「2016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세부사업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 광주보건대학교는 2016. 7. 4. '광주보건대학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016년 수정수행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AF 전자복사기 구입 비용 8,955,700원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인 'NCS 기반 교육운용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사업 계획서 未반영 사업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7. 4.부터 2017. 1. 18.까지 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정수행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위 AF 전자복사기 등 비품 6종 구입 비용 합계 13,819,960원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인 'NCS 기반 교육운용사업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5명)

【붙임】

사업계획서 未반영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집행일	집행내역	수량	단가	금액
1	2016	2016.7.4	AF 전자복사기 구입	1	8,955,700	8,955,700
2		2017.1.18	AF 데스크톱컴퓨터 구입	2	1,055,385	2,110,770
			AF 모니터 구입	3	251,350	754,050
			AF 레이저프린터 구입	3	301,620	904,860
			AF 작업용의자 구입	1	176,900	176,900
			AF 파티션 구입	1	917,680	917,680
합계						13,819,96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광주보건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p>일반경쟁대상 수의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한국연구재단)」 제14조 제5항에는 지원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광주보건대학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11. 18. 경쟁입찰 대상인 'AG'(계약금액 80,100천원)을 AH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붙임】 “일반경쟁 대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2016. 11. 18.부터 12. 13.까지 위 용역계약 등 일반경쟁 대상 계약 3건(계약금액 합계 162,6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붙임】

일반경쟁 대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1	AG	2016.11.18.	80,100	AH
2	-	2016.12.1.	32,500	
3	-	2016.12.13.	50,000	
합계			162,6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p>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단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수령) 등</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한양대학교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참여인력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외 3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였을 때 지급표(연구원 25,000원 책임연구원 35,000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수령)에 관한 사항】 ——— ①</p> <p>- 한양대학교 AI(계약기간 ‘---’~‘---’)은 2017. 1. 9.(수) 사무실 출입기록(보안관리업체 잠금장치) 상 최종 퇴근 시간이 19:27으로 되어 있음에도 17:30~20:30(3시간)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AJ에 제출하는 등 【붙임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수령) 현황”과 같이 2017. 1.부터 2019. 1.까지 위 AI 등 7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총 303건을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에 포함하여 AJ에 제출하고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8,09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p> <p>【감사자료 임의교체에 관한 사항】 ——— ②</p> <p>- 한양대학교 AI(계약기간 ‘---’~‘---’)은 2019. 6. 12. 진행된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감사(‘19.6.12.~6.18.) 과정에서</p>	<p>< ①,② 관련 ></p> <p>○ 문책(1명)</p> <p>< ① 관련 ></p> <p>○ 기관경고</p> <p>○ 통보(문책, 4명)</p> <p>○ 경고(2명)</p> <p>○ 시정(회수)</p> <p>< ② 관련 ></p> <p>○ 경고(1명)</p> <p><별도조치></p> <p>○ 고발</p> <p>○ 수사의뢰</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본인 및 2명(AK, AL)의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정규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6:00~19:00로 시간외근무시간 기재)가 문제 되자 당일 17시 경 시간외근무시간을 18:00~21:00로 정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 6매를 새로 작성한 다음 【붙임 2】 “감사자료(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 임의교체 현황”과 같이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 퇴근하자 AM과 사전 논의 하에 18:40 경 함께 감사장에 들어가 기히 제출한 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임의교체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수령) 현황

연번	신청자		신청현황				실제 근무현황(세콤기준)		비고
	직급	성명	일자	신청시간	시간	신청액(지급액)	세콤해제	세콤잔금	
1	-	AI	2017.01.09	17:30~20:30	3	25,000	09:37	19:27	
2			2017.01.11	17:30~20:30	3	25,000	09:42	19:40	
3			2017.01.13	17:30~20:30	3	25,000	09:48	17:03	
4			2017.01.25	17:30~20:30	3	25,000	09:59	19:41	
5			2017.01.26	17:30~20:30	3	25,000	09:46	17:20	
6			2017.01.27	17:30~20:30	3	25,000	-	-	방학중(금요일)
(중략)									
소계						2,975,000			
119	-	-	2016.12.21	17:30~20:30	3	25,000	08:16	18:33	
120			2016.12.22	17:30~20:30	3	25,000	09:49	18:05	
121			2016.12.27	17:30~20:30	3	25,000	09:48	19:30	
122			2016.12.29	17:30~20:30	3	25,000	09:20	18:23	
123			2017.01.09	17:30~20:30	3	25,000	09:37	19:27	
(중략)									
소계						2,510,000			
219	-	-	2018.10.15	16:00~19:00	3	25,000	08:38	17:53	
220			2018.10.17	16:00~19:00	3	25,000	08:32	18:37	
221			2018.10.22	16:00~19:00	3	25,000	08:36	18:56	
222			2018.10.24	16:00~19:00	3	25,000	08:26	17:32	
(중략)									
소계						515,000			
239	-	-	2018.10.15	16:00~19:00	3	25,000	08:38	17:53	
240			2018.10.17	16:00~19:00	3	25,000	08:32	18:37	
241			2018.10.22	16:00~19:00	3	25,000	08:36	18:56	
242			2018.10.24	16:00~19:00	3	25,000	08:26	17:32	
243			2018.10.29	16:00~19:00	3	25,000	08:21	20:10	
(중략)									
소계						540,000			
260	-	-	2017.06.07	17:30~21:00	3	35,000	08:28	17:33	
261			2017.06.08	17:30~21:00	3	35,000	08:25	17:36	
262			2017.06.12	17:30~22:00	3	35,000	08:31	18:29	
263			2017.06.20	17:30~21:00	3	35,000	08:32	18:48	
(중략)									
소계						990,000			
288	-	-	2016.12.22	17:30~20:30	3	35,000	09:49	18:05	
289			2016.12.27	17:30~20:30	3	35,000	09:48	19:30	
290			2016.12.29	17:30~20:30	3	35,000	09:20	18:23	
(중략)									
소계						210,000			
(중략)									
301	-	-	2017.03.21	17:30~20:30	3	35,000	08:51	17:23	
302			2017.03.22	17:30~20:30	3	35,000	09:07	17:02	
303			2017.03.27	17:30~20:30	3	35,000	09:01	17:18	
소계						350,000			
합계						8,090,000			

※ 방학중(하계 6.20~8.10.내외, 동계 12.20~2.10.내외) 근무시간 : 10:00~17:00 / 학기중 근무시간 : 08:30~17:30

감사자료(시간외근무수당 신청서) 임의교체 현황

연번	신청자		기 제출자료(정규 근무시간 포함 자료)			임의교체 자료(정규 근무시간 제외)	
	직급	성명	대상월	근무일자	근무시간(수정전)	근무시간(수정후)	
1	-	-	2018. 10~11월분	2018.10.15.	16:00~19:00	18:00~21:00	
2				2018.10.17.			
3				2018.10.22.			
4				2018.10.24.			
5				2018.10.29.			
6				2018.10.30.			
7				2018.11.06.			
8				2018.11.08.			
9				2018.11.09.			
10				2018.11.14.			
11				2018.11.15.			
12				2018.11.16.			
13				2018.11.26.			
14	-	-	2018. 12월분	2018.12.06.	"	"	
15				2018.12.11.			
16				2018.12.17.			
17				2018.12.19.			
18				2018.12.26.			
19	-	-	2018. 10~11월분	2018.10.15	"	"	
20				2018.10.17			
21				2018.10.22			
22				2018.10.24			
23				2018.10.29			
24				2018.10.30			
25				2018.11.06			
26				2018.11.08			
27				2018.11.09			
28				2018.11.14			
29				2018.11.15			
30				2018.11.16			
31				2018.12.06			
32				2018.12.11			
33				2018.12.17			
34	-	-	2018. 12월분	2018.12.18	"	"	
35				2018.12.19			
36				2018.10.15			
37				2018.10.17			
38				2018.10.22			
39	2018.10.24						
40	2018.10.29						
41	2018.10.30						
42	2018.11.06						
43	2018.11.08						
44	2018.11.09						
45	2018.11.14						
46	2018.11.15						
47	2018.11.16						
48	2018.11.26						
49	-	-	2018. 12월분	2018.12.06	"	"	
50				2018.12.11			
51				2018.12.17			
52				2018.12.19			
53				2018.12.26			

※ 정규 근무시간(16:00~17:30) 제외 시 실제 시간외 근무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불가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양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1	<p>계약체결 부적정</p> <p>○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기준(한국연구재단)」 및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따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의 경우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 하여야 하며, 입찰 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수의계약 체결 관련】 ①</p> <p>- 한양대학교는 2017. 10. 20. 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경쟁 대상인 'AN'(계약금액 29,700천원) 계약을 <<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p> <p>【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관련】 ②</p>	<p>< ① 관련 > ○ 주의(2명)</p> <p>< ② 관련 > ○ 기관주의</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한양대학교는 2017. 8. 25.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AO(계약금액 : 33,000천원)' 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공고 없이 견적서를 제출받고 ▽▽과 계약을 체결 하는 등 【붙임】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19. 1.까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및 수도권 대학특성화사업 추진 시 위 AO 등 계약 20건을 체결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공고		추정 가격	건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재원	
		일자	장소							
1	수의	미공고	견적서 학교제출	38,500	AO	'17.8.25	33,000	▽▽	CO RE	
2	입찰	'17.4.26	학교 홈페이지	32,088	-	'17.5.12	21,500	-	“	
3	“	'17.6.9	“	70,000	-	'17.6.21	68,900	-	“	
4	“	'17.12.21	“	30,000	-	'17.12.29	29,500	-	“	
5	“	'17.3.3	“	37,400	-	'18.2.5	37,400	-	“	
6	“	'18.2.2	“	37,568	-	'18.2.12	33,576	-	“	
7	“	'17.12.29	“	238,700	-	'18.1.12	175,450	-	“	
8	“	'18.2.8	“	69,816	-	'18.2.20	65,377	-	“	
9	입찰	'18.6.28	학교 홈페이지	75,000	-	'18.7.9	72,600	-	“	
10	입찰	'17.5.12	학교 홈페이지	33,000	-	'17.5.23	29,000	-	CK	
11	수의	미공고	견적서 학교제출	29,700	-	'17.9.2	24,200	-	“	
12	“	“	“	57,200	-	'17.9.15	44,000	-	“	
13	입찰	'17.11.22	학교 홈페이지	90,000	-	'17.12.1	88,077	-	“	
14	“	'17.12.1	“	25,190	-	'17.12.11	23,870	-	“	
15	“	'17.12.13	“	26,950	-	'17.12.26	26,840	-	“	
16	“	'18.5.18	“	25,000	-	'18.6.3	24,800	-	“	
17	“	'18.5.28	“	29,150	-	'18.6.12	28,000	-	“	
18	“	'18.8.23	“	27,500	-	'18.9.10	26,400	-	“	
19	“	'18.10.30	“	40,000	-	'18.11.26	39,500	-	“	
20	“	'18.2.2	“	35,526	-	'19.1.16	35,348	-	“	
합계								927,338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양대학교(ERICA)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2	<p>휴학생 장학금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한국연구재단)」에는 사업비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학부 재학생이고, 장학금은 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주요 집행 제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도, 한양대학교(ERICA)는 2018학년도 1학기에 군입대 휴학(-----)한 AP에게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비에서 장학금 2,315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휴학생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장학금 지급 현황” 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AP 등 휴학생 20명에게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비에서 장학금 합계 43,594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p>○ 경고(4명)</p>

【붙임】

휴학생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학기	지급대상				지급액	학적변동내역	
		소속학과	학년	학번	성명		변동일	종류
1	2018-1	-	-	-	AP	2,315	-----	군입대휴학
2	2018-1	-	-	-	-	2,315	-	군입대휴학
3	2018-1	-	-	-	-	2,046	-	군입대휴학
4	2018-1	-	-	-	-	2,046	-	군입대휴학
5	2018-1	-	-	-	-	2,046	-	군입대휴학
6	2018-1	-	-	-	-	2,046	-	군입대휴학
7	2018-1	-	-	-	-	2,315	-	군입대휴학
8	2018-1	-	-	-	-	2,046	-	군입대휴학
9	2018-1	-	-	-	-	2,046	-	군입대휴학
10	2018-1	-	-	-	-	2,046	-	군입대휴학
11	2018-1	-	-	-	-	2,315	-	군입대휴학
12	2018-1	-	-	-	-	2,315	-	군입대휴학
13	2018-1	-	-	-	-	2,315	-	군입대휴학
14	2018-2	-	-	-	-	2,315	-	군입대휴학
15	2018-2	-	-	-	-	2,030	-	군입대휴학
16	2018-2	-	-	-	-	2,046	-	군입대휴학
17	2018-2	-	-	-	-	2,315	-	군입대휴학
18	2018-2	-	-	-	-	2,046	-	군입대휴학
19	2018-2	-	-	-	-	2,315	-	군입대휴학
20	2018-2	-	-	-	-	2,315	-	군입대휴학
합 계						43,594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양대학교(ERICA)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3	<p>BK21 플러스 사업팀 자체 운영규정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한국연구재단)」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원 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고,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한국연구재단)」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 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한양대학교(ERICA) AQ은 2017학년도 1학기에 자체 운영규정에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연구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 명시하지 아니하고 석사과정 참여대학원생 19명 중 13명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 10명에게는 월별 지급 방식으로 1인당 600~1,800천원을, 3명에게는 학기별 지급 방식으로 1인당 3,300~7,500천원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붙임】 “BK21 플러스 사업팀별 자체 규정 미비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 6. 감사일 현재까지 한양대학교(ERICA) 9개 BK21 플러스 사업팀은 자체 운영규정 상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장학금 지급 기준이 미비한 채로 총 641명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 연구장학금 합계 2,922,987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9명) 통보 사업팀(단) 자체 규정에 합리적·객관적인 지원 대학원생 선정 및 연구장학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붙임】

BK21 플러스 사업팀별 자체규정 미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번	사업팀 (사업팀장)	학기	참여학생		연구장학금			사업팀 규정 관련조항 유무					
			과정	인원	지원 학생	지급 시기	1인당 지급액	총 지급액	선정기준	지급기준			
1	AQ	2017-1	석사	19	10	월	600~1,800	51,080	×	×			
					3	학기	3,300~7,500	10,710					
			박사	7	1	월	1,000~2,500	7,200					
					2	학기	1,000~7,200	4,950					
		2017-2	석사	22	9	월	600~1,800	51,920					
					4	학기	600~8,100	4,500					
			박사	4	3	월	1,000~2,500	19,450					
					1	학기	3,000~7,200	3,000					
		(중략)											
		2019-1	석사	10	5	월	600~1,800	15,354					
5	학기				600~2,600	5,817							
박사	9		3	월	1,000~2,500	13,350							
			3	학기	1,700	1,700							
소 계		113	78			351,257							
(중략)													
8		2017-1	석사	23	9	월	483~1,600	33,983	×	△ (연구수행 평가, 지급시기 미비)			
					12	월	1,000~1,500	51,450					
		2017-2	석사	20	15	월	600~1,650	50,180					
					12	월	1,000~2,000	34,905					
		2018-1	석사	29	17	월	600~940	54,320					
					10	월	1,000~1,200	38,800					
		2018-2	석사	26	16	월	600~1,000	50,720					
					11	월	1,000~1,200	27,200					
		2019-1	석사	22	8	월	600~1,390	19,180					
					12	월	1,000~1,200	10,200					
소 계		177	99			0							
9		2017-1	석사	8	0	월		0	○	×			
					6	월	6,000~9,000	27,000					
		2017-2	석사	9	1	월	5,400	5,400					
					6	월	6,000~6,400	24,400					
		2018-1	석사	9	1	월	10,800	10,800					
					7	월	6,000	18,000					
		2018-2	석사	7	1	월	10,800	10,800					
					5	월	3,000~8,700	20,700					
		2019-1	석사	7	0	월		0					
					6	월	3,000	3,000					
소 계		70	19			120,100							
합 계								2,922,987					

※ ○ : 관련조항 있음, △ : 필요내용 미흡, × : 관련조항 없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양대학교(ERICA)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p>계약체결 부적정</p> <p>○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하여야 하고,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통신·소방 등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 하여야 하고, 입찰공고는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데도,</p> <p>【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관련】 ①</p> <p>- 한양대학교(ERICA)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일환으로 2017. 8. 1. AR에 비치할 노트북 구매 계약을 경쟁입찰로 추진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자체 시스템)를 통해 입찰 공고하고, 입찰서를 제출받는 등 【붙임 1】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입찰 현황”과 같이 2017. 3. 28.부터 2019. 1. 7.까지</p>	<p>< ① 관련 > ○ 기관주의</p> <p>< ② 관련 > ○ 주의(1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위 노트북 구매 계약 등 총 70건의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합계 3,163,463,368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p> <p>- 또한, 2017. 8. 1. AS(추정가격 66,000천원) 계약을 추진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을 제출받아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2】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7. 4. 2.부터 2018. 11. 2.까지 위 공사계약 등 15건(합계 700,668,300원)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입찰공고 시기 미준수 관련】 ②</p> <p>- 한양대학교(ERICA)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일환으로 2018. 7. 24. AT 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동안만 입찰공고를 하는 등 【붙임 3】 “입찰공고 시기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8. 7. 24.부터 2018. 8. 9.까지 위 AT 등 계약 2건(합계 143,990천원)을 추진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붙임 1】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입찰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번	계약일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물품 구매	1	2017.08.01	AR 노트북 구매	30,870,000	-
	2	2017.08.08	-	58,926,000	-
	3	2017.08.08	-	29,673,000	-
	4	2017.08.10	-	36,006,600	-
	5	2017.08.22	-	39,950,000	-
	6	2017.08.28	-	26,500,000	-
	7	2017.08.28	-	28,974,000	-
	8	2017.08.28	-	46,860,000	-
	9	2017.08.28	-	59,565,000	-
	(중략)				
용역	64	2017.09.04	-	38,500,000	-
	65	2018.10.30	-	35,000,000	-
	66	2018.11.14	-	74,100,000	-
공사	67	2017.03.28	-	128,657,000	-
	68	2017.11.07	-	94,050,000	-
	69	2018.07.24	-	93,500,000	-
	70	2018.08.09	-	50,490,000	-
합계				3,163,463,368	

【붙임 2】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번	계약일	계약건명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공사	1	2017.04.02	AS	66,000,000	30,000,000	◇◇
	2	2017.11.20	-	66,000,000	49,500,000	-
	3	2018.12.19	-	29,000,000	25,465,000	-
	4	2017.08.05	-	85,000,000	75,000,000	-
	5	2017.10.12	-	59,730,000	37,800,000	-
	6	2017.11.07	-	48,000,000	23,500,000	-
	7	2018.05.14	-	29,000,000	27,000,000	-
	8	2018.05.25	-	90,000,000	80,190,000	-
	9	2018.06.22	-	35,890,000	33,990,000	-
	10	2018.06.22	-	31,240,000	29,040,000	-
	11	2018.07.02	-	60,500,000	48,290,000	-
	12	2018.08.01	-	76,000,000	65,000,000	-
	13	2018.08.27	-	37,400,000	35,753,300	-
	14	2018.10.02	-	58,300,000	55,000,000	-
	15	2018.11.02	-	88,000,000	85,140,000	-
합계				860,060,000	700,668,300	

감사결과 처분서

입찰공고 시기 未준수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번	계약일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입찰 마감일	정상 공고일수 (기간)	실제 공고일수 (기간)
공사	1	2018.07.24	AT	93,500,000	-	'18.07.17	7일 (‘18.07.09 ~07.17.)	4일 (‘18.07.12 ~07.17)
	2	2018.08.09	-	50,490,000	-	'18.08.03	7일 (‘18.07.26 ~08.03)	3일 (‘18.07.30 ~08.03)
합계				143,990,000				

기관명 : 한양대학교(ERICA)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p>노트북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한양대학교(ERICA) 물품관리규정」 제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물품관리책임자는 사용물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사용물품의 안전한 보관 및 보존, 이동, 반납 처리, 사용물품에 관한 물품조사, 손망실 및 불용품 파악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으며, 관리부서는 접수된 손·망실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용부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현물 변상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한양대학교(ERICA)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일환으로 구입한 노트북 1대(자산번호 ♡♡♡♡-♡♡♡♡♡, 구입가격 1,281천원)를 AU에게 2017. 9. 11.부터 2017. 12. 21.까지 대여하고도 2019. 6. 21.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받지 않는 등 【붙임】 “대여 노트북 관리 부적정 현황” 과 같이 2017. 9. 11.부터 2019. 4. 1.까지 위 AU 등 재학생 24명에게 노트북 총 24대를 대여한 후 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2019. 6. 21.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나아가, 위 사업 일환으로 구입한 노트북 139대 중 1대(자산번호 ♠♠♠♠-♠♠♠♠♠, 구입가격 1,625천원)는 소재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 통보 - 대여기간이 초과된 노트북 24대는 조속히 반납받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노트북 1대에 대해서는 변상 통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붙임】

대여 노트북 관리 부적정 현황

(기준일 : 2019.6.21.)

(단위 : 원, 일)

연번	학생		대여 노트북			도과 일수
	소속	성명	자산번호	구입금액	대여기간	
1		AU	XXXXXXXXXX	1,281,000	2017.09.11~2017.12.21	547
2		-	-	1,230,000	2018.03.05~2018.06.21	365
3		-	-	1,453,680	2018.03.05~2018.06.21	365
4		-	-	1,453,680	2018.03.14~2018.06.21	365
5		-	-	1,281,000	2018.06.27~2018.08.24	301
6		-	-	1,281,000	2018.06.27~2018.08.24	301
7		-	-	1,259,000	2018.07.09~2018.08.24	301
8		-	-	1,259,000	2018.09.13~2018.12.21	182
9		-	-	1,259,000	2018.09.13~2018.12.21	182
10		-	-	1,281,000	2018.09.17~2018.12.21	182
11		-	-	1,230,000	2018.09.17~2018.12.21	182
12		-	-	1,453,680	2018.09.27~2018.12.21	182
13		-	-	1,281,000	2018.10.29~2018.12.21	182
14		-	-	1,259,000	2019.01.04~2019.02.18	123
15		-	-	1,281,000	2019.01.04~2019.02.18	123
16		-	-	1,259,000	2019.01.10~2019.02.18	123
17		-	-	1,230,000	2019.01.10~2019.02.18	123
18		-	-	1,281,000	2019.01.10~2019.02.18	123
19		-	-	1,281,000	2019.01.10~2019.02.18	123
20		-	-	1,259,000	2019.01.11~2019.02.18	123
21		-	-	1,281,000	2019.01.11~2019.02.18	123
22		-	-	1,281,000	2019.01.11~2019.02.18	123
23		-	-	1,281,000	2019.01.11~2019.02.18	123
24		-	-	1,230,000	2019.01.17~2019.02.18	12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한양대학교(ERICA)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6	<p>교과목개발(개선)비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한양대학교(ERICA))」에 따르면 PRIME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목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개선)*에 따른 원고료는 개인형의 경우 지급 상한액을 '배정예산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단 및 사업부서는 교과목 개발(개선) 완료 시 교과목 개요서 및 개발보고서를 과목별로 접수하여 검토하고 개발(개선) 완료된 교과목에 대한 개발(개선)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항목 : 원고료, 보조인력활용비, 인쇄비, 출장비 - 한양대학교(ERICA)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일환으로 'AV' 교과목을 개인형으로 개선한 AW에게 2017. 11. 1. 원고료 600천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붙임】 “교과목 개발(개선)비 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위 AW 등 개인형으로 교과목을 개발(개선)한 교수 13명(21과목)에게 원고료 합계 12,100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특히, 'AX' 교과목을 개발('AY.1학기 강좌 개설)한 AZ 등 【붙임】 “교과목 개발(개선)비 초과 지급 현황” 연 번 6, 8, 14, 17번에 해당하는 4명에게는 교과목 개발보고서도 제출받지 않고 원고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 지급된 교과목 개발비 합계 12,100천원을 관련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Z 등 교과목 개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료를 지급받은 4명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아 '배정예산 80% 이내 지급분'에 대한 회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붙임】

교과목 개발(개선)비 초과 지급 현황

(단위: 원)

연년	개발 형태	개발(개선) 교과목명	개발(개선)자		원고료 지급일	배정 예산액	실제 지급액 (배정액 100%)	정상 지급액 (배정액 80%)	초과 지급액	교과목 개발 보고서 미제출
			소속	성명						
1	개선	AV	-	AW	2017.11.01	3,000,000	3,000,000	2,400,000	600,000	
2	개발	-	-	-	2018.08.03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3	개선	-	-	-	2018.08.03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4	개발	-	-	-	2018.08.03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5	개선	-	-	-	2018.08.03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6	개발	AX	-	AZ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
7	개선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8	개발 (특수)	-	-	-	2019.01.11	5,000,000	5,000,000	4,000,000	1,000,000	√
9	개발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10	개선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11	개선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12	개선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13	개선	-	-	-	2019.01.11	5,000,000	5,000,000	4,000,000	1,000,000	
14	개선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
15	개선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16	개발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17	개발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
18	개선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19	개발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20	개발 (특수)	-	-	-	2019.01.11	5,000,000	5,000,000	4,000,000	1,000,000	
21	개선	-	-	-	2019.01.11	2,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합계						60,500,000	60,500,000	48,400,000	12,100,000	